

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0월 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
(2008년 10월 21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보건관리과장 종석목)

가. 제안이유

-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부천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.
(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)
- 장을 삭제하고 조 배열을 조정함.(안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세계보건기구(WHO)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되었는지?○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총괄은 기획부서에 하여야 하며, 건강, 보건, 환경, 주택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시민건강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확대 추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2007년도에 가입하였음.(보건관리과장)○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(보건관리과장)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음

나. 반대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제1조 및 제2조로 한다.

제2장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, 제7조(중전의 제2장제7조) 중 후단을 삭제한다.

제3장 제11조를 제11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장 제12조부터 제14조(중전의 제3장제12조부터 제14조)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(건강도시사업의 심의)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1. 건강도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
2.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
3.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
4.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장제15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5장제16조부터 제18조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8호
의결 년월일	2008. 10. 24. (제147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7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, 그 기능을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부천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 함.
(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)
- 나. 장을 삭제하고 조 배열을 조정함.(안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및 제 12조부터 제15조까지)

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제1조 및 제2조로 한다.

제2장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, 제7조 (중전의 제2장제7조) 중 후단을 삭제한다.

제3장제11조를 제11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장 제12조부터 제14조(중전의 제3장제12조부터 제14조)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(건강도시사업의 심의)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

「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1. 건강도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
2.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
3.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
4.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장제15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5장제16조부터 제18조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장 총칙</u>	<u>〈삭 제〉</u>
제1조(목적) (생 략) 제2조(정의) (생 략)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 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<u>제2장 기본이념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</u>	<u>〈삭 제〉</u>
제3조(기본이념) (생 략) 제4조(기본사업) (생 략)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(생 략) 제6조(실행계획의 수립) (생 략) 제7조(재정지원)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부천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.</u>	제3조(기본이념) (현행과 같음) 제4조(기본사업) (현행과 같음)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(현행과 같음) 제6조(실행계획의 수립) (현행과 같음) 제7조(재정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〈삭 제〉</u>
제8조(건강주간의 운영) (생 략) 제9조(건강지역의 설정) (생 략) 제10조(장기발전계획의 반영) (생 략)	제8조(건강주간의 운영) (현행과 같음) 제9조(건강지역의 설정)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장기발전계획의 반영) (현 행과 같음)
<u>제3장 위원회의 설치·운영</u>	<u>〈삭 제〉</u>
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<u>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건강</u>	제11조(건강도시사업의 심의) 건강 도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

현 행	개 정 안
<p>도시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강도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.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.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.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<p>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강도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.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.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.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<p>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원미구보건소장이 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의 각 국장 및 소사구·오정구 보건소장 2. 부천시의회이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 3. 부천교육청 및 부천남·중부경찰서 관계자 각 1명 4. 건강도시 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전문가 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5. <u>건강도시 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장</u></p> <p>④ <u>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⑤ <u>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그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<u>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건강도시업무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건강도시업무담당이 된다.</u></p>	
<p>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<u>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	<p><삭제></p>
<p>제14조(수당) <u>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4장 지역사회의 역할</u></p> <p><u>제15조</u>(시민 등의 역할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제></u></p> <p><u>제12조</u>(시민 등의 역할) (종전의 제15조와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5장 보칙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제></u></p>
<p><u>제16조</u>(의견청취 등)</p>	<p><u>제13조</u>(의견청취 등) (종전의 제16조와 같음)</p>
<p><u>제17조</u>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)</p>	<p><u>제14조</u>(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) (종전의 제17조와 같음)</p>
<p><u>제18조</u>(시행규칙)</p>	<p><u>제15조</u>(시행규칙) (종전의 제18조와 같음)</p>